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63

발의연월일: 2025. 2. 11.

발 의 자 : 홍기원 · 안태준 · 문진석

한민수 · 윤후덕 · 허 영

신영대 • 윤종군 • 전현희

강선우 · 김교흥 · 김영배

이정문 · 임오경 · 윤호중

권칠승·조승래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등을 포함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또한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기본계획 작성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 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 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실적 등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ㆍ제13조 신설 등).

법률 제 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통일교육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연차보고서)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기본계획에 따른 통일교육 추진실적 및 성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	매년 통일교육기본계획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매년 3월 3
	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
	<u>다.</u>
<u><신 설></u>	제13조(연차보고서)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기본계획에 따른 통일
	교육 추진실적 및 성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